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보고자료

주요업무보고

2018. 8.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일반 현황

☐ 설립근거

❍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를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67호, 2007. 01. 26.]·시행[2007. 09. 01.]되었고, 동 법률 제15조에 따라 교육감은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

☐ 학교안전공제회의 기능

❍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을 통한 피공제자 보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수립을 통한 체계적·효율적인 안전관리 운영시스템 마련

❍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피해의 신속·적정한 보상·지원을 통한 학교안전망구축

❍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통한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

☐ 연혁

❍ ’87. 12. 09.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설립

❍ ’88. 03. 01. 보상업무 개시

❍ ’07. 09. 0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 ’07. 09. 03.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법인 설립등기

❍ ’12. 04. 01. 학교폭력피해 지원 개시

❍ ’15. 01. 20.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제도 신설

❍ ’16. 09. 01. 여행자공제사업 개시

☐ 조직 및 정·현원

❍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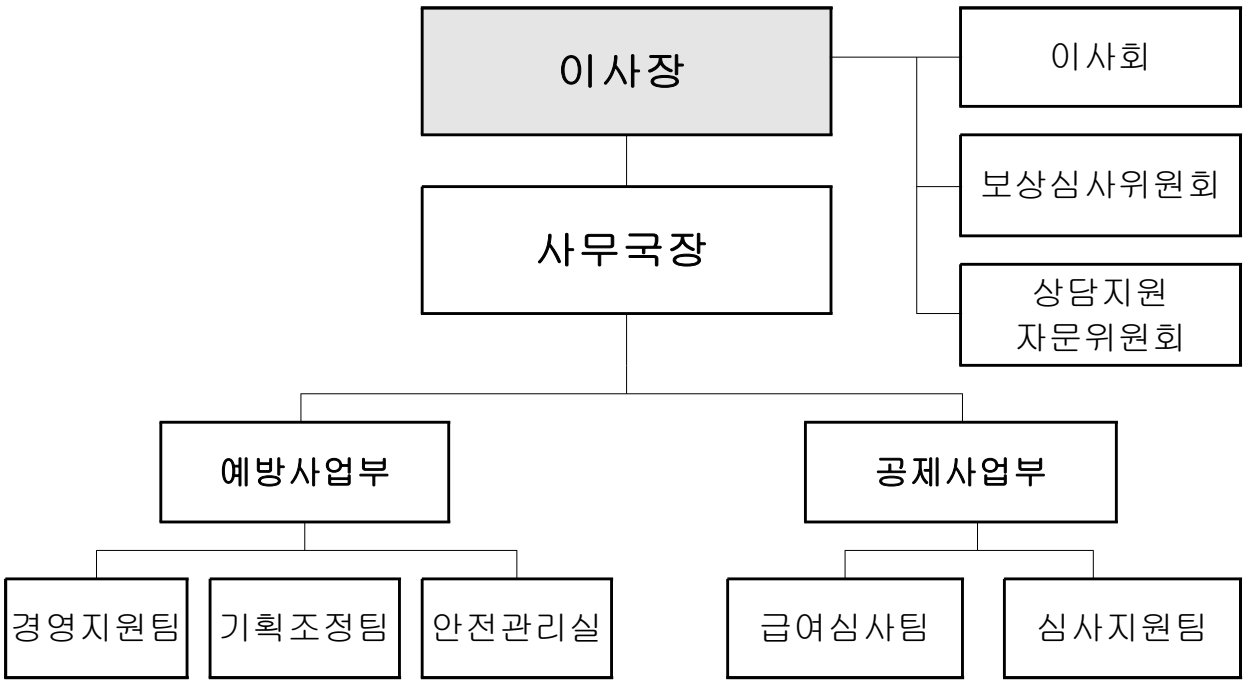

❍ 정·현원

- 특정직 및 일반직

구분	특정직	일 반 직				계
	3급	5급	6~7급	8~9급	소계	
정원	1	2	5	7	14	15
현원	1	1	5	8	14	15

- 계약직

구분	실장	과장	팀장	대리	주임	사원	계
정원	1	4	5	5	6	2	23
현원	1	3	4	5	4	0	17

□ 임원 현황

❍ 이사장: 김형태 (교육을 바꾸는 새힘 대표, 제8대 서울시 교육의원)

❍ 임　기: 3년 ('16.9.1. ~ '19.8.31.)

❍ 구성현황

구분	학교장	학부모	교수	공무원	변호사	전문의	회계사	기타	계
이사	8	2	1	1	1	1		1	15
감사				1			1		2
계	8	2	1	2	1	1	1	1	17

❍ 임원명단 (소속은 임명 당시를 기준으로 함)

연번	구분	성 명	직 위	소 속	비 고
1	이사장	김형태	대 표	교육을 바꾸는 새 힘	제8대 서울시의회 의원
2	이 사	황지현	원 장	서울진관유치원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3	〃	유정옥	교 장	서울도성초등학교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4	〃	강희창	교 장	경희초등학교	한국 중고아이스하키협회 부회장
5	〃	서종일	교 장	이수중학교	서울국공립중학교교장회 회장
6	〃	이희철	교 장	경신중학교	한국중등축구연맹 이사
7	〃	박건호	교 장	경기고등학교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8	〃	조형래	교 장	배명고등학교	서울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
9	〃	심규학	교 장	서울정애학교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10	〃	이주선	학부모	성신여자중학교	성신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
11	〃	김영애	학부모	서울도봉초등학교	도봉구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활동가
12	〃	손준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휴먼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노동권리보호관
13	〃	김덕원	전문의	녹색병원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교수
14	〃	김영근	교 수	고려대학교	한국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센터 연구위원
15	〃	장석윤	교육행정국장	서울시교육청	
1	감 사	장원택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2	〃	엄동환	정책감사팀장	서울시교육청	

☐ 보상심사위원 현황

❍ 위원장: 조성남 (교육재정과장)

❍ 임　기: 2년 ('17.9.19. ~ '19.9.18.)

❍ 구성현황

구분	학교장	학부모	교수	공무원	변호사	전문의	보험전문가	계
인원	3	2	1	2	2	2	3	15

❍ 위원명단 (소속은 임명 당시를 기준으로 함)

연번	구 분	성 명	직 위	소 속	비 고
1	위원장	조성남	교육재정과장	서울시교육청	
2	위　원	홍진영	교장	서울천왕초등학교	
3	〃	서종일	교장	이수중학교	
4	〃	임지혜	학부모	잠실여자고등학교	학부모 대표
5	〃	박용식	변호사	세계법무법인	변호사
6	〃	김윤수	전문의	가톨릭대부천성모병원	전문의
7	〃	고　용	전문의	한양대국제병원	전문의
8	〃	최철규	대표	서종손해사정법인	보험전문가
9	〃	박상선	대표	라인업손해사정법인	보험전문가
10	〃	강효선	대표	화승손해사정법인	보험전문가
11	〃	승영길	전(前)공무원	고덕평생학습관장	
12	〃	김정희	교장	문래중학교	
13	〃	장경희	학부모	서울봉래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14	〃	김영근	부교수	고려대학교	교수
15	〃	장유종	변호사	서울시교육청	변호사

▢ 상담지원자문위원 현황

❍ 위원장: 이영식 (중앙대학교병원 전문의)

❍ 임　기: 2년 ('16.9.26. ~ '18.9.25.)

❍ 구성현황

구분	전문의	변호사	상담 전문가	교수	공무원	학부모	계
인원	2	1	1	1	1	1	7

❍ 위원명단 (소속은 임명 당시를 기준으로 함)

연번	구 분	성 명	직 위	소 속	비 고
1	위원장	이영식	교　수	중앙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위　원	홍순범	교　수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	〃	김욱균	변호사	김욱균&이효정 법률사무소	대표
4	〃	채숙희	상담전문가	행복심리센터	임상심리사, 대표
5	〃	박세란	조교수	서울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6	〃	김경아	공무원	서울Wee센터	상담교사
7	〃	박진희	학무모	서울시 마을공동체 산업	행복한 가정&행복한 마을 행복된 만남 대표

▢ 학교안전공제회 가입 현황

(단위: 교, '18.7.31. 현재)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외국인학교	기타학교	합계
가입대상교	859	596	384	320	30	13	2	29	2,233
가입교	818	596	384	320	30	13	2	29	2,192
미가입교	41	-	-	-	-	-	-	-	41

□ 공제급여 지급 현황

❍ 연도별 공제급여 지급 현황

(단위: 건, 천원)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	외국인	기타	계	전년대비 증감율
2012	건수	640	3,780	3,632	2,850	67	32	10	18	**11,029**	-
	금액	59,232	1,159,762	1,750,903	1,406,222	45,959	14,344	857	3,926	**4,441,205**	-
2013	건수	725	3,774	3,865	2,917	65	35	14	32	**11,427**	**3.6%**
	금액	67,035	1,077,019	2,352,165	2,426,103	26,281	134,274	7,998	13,471	**6,104,346**	**37.4%**
2014	건수	1,026	4,347	4,506	3,437	124	25	16	20	**13,501**	**18.1%**
	금액	100,143	1,683,590	1,917,063	2,841,416	37,738	29,853	8,506	6,135	**6,624,444**	**8.5%**
2015	건수	1,080	4,305	4,339	3,577	95	27	8	27	**13,458**	**△0.3%**
	금액	99,278	945,155	1,871,357	1,751,840	23,375	11,672	1,234	8,830	**4,712,741**	**△28.9%**
2016	건수	997	4,378	3,919	3,360	80	22	8	19	**12,783**	**△5.0%**
	금액	352,159	1,405,546	1,362,424	1,646,869	19,283	5,742	1,008	9,036	**4,802,067**	**1.9%**
2017	건수	1,008	4,319	3,948	3,175	72	28	11	24	**12,585**	**△1.5%**
	금액	224,293	1,265,547	1,383,803	2,346,297	73,430	41,403	3,164	6,260	**5,344,197**	**11%**
2018	건수	491	2,531	1,977	1,716	46	19	3	13	**6,796**	
	금액	90,411	529,322	1,230,264	1,569,275	11,465	9,269	393	2,379	**3,442,778**	

※2018년도 7월 31일 기준

❍ 2018년도 공제급여 지급 세부 현황

- 총괄 현황

구분	2018년(1.1.~7.31.)	2017년(1.1.~7.31.)	비 고
건수	**6,796건**	6,753건	**43건(0.6%) 증가**
금액	**34억4천만원**	25억원	**9억4천만원(37.6%) 증가**

- 시간별 공제급여 지급 현황

(단위: 건, ’18.1.1.~7.31.)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학교	외국인	기타학교	계
체육수업	63	633	722	687	9	-	-	4	**2,118**
실험실습	-	8	13	28	-	-	-	-	49
교과수업	191	230	128	67	15	1	1	-	633
청소시간	1	11	10	6	-	-	-	-	28
휴식시간	70	1,039	657	397	9	7	1	5	**2,185**
방과후시간	120	372	346	427	5	6	1	4	**1,281**
기 타	46	238	101	104	8	5	-	-	502
계	491	2,531	1,977	1,716	46	19	3	13	**6,796**

- 장소별 공제급여 지급 현황

(단위: 건, ’18.1.1.~7.31.)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학교	외국인	기타학교	계
교 실	259	590	255	178	20	3	1	1	**1,307**
운동장	58	692	802	821	5	2	-	3	**2,383**
체육관	53	469	441	375	6	-	2	3	**1,349**
계 단	24	253	133	98	2	5	-	2	517
복 도	48	367	190	93	5	5	-	2	710
기 타	49	160	156	151	8	4		2	530
계	491	2,531	1,977	1,716	46	19	3	13	**6,796**

- 유형별 공제급여 지급 현황

(단위: 건, ’18.1.1.~7.31.)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학교	외국인	기타학교	계
사 망	-	-	-	-	-	-	-	-	-
장 해	1	-	7	17	-	-	-	-	25
골 절	48	598	509	360	13	9	-	4	**1,541**
열 상	249	629	306	269	17	6	2	-	**1,478**
관절염좌	56	411	382	548	2	1	-	6	1,406
기 타	137	893	773	522	14	3	1	3	2,346
계	491	2,531	1,977	1,716	46	19	3	13	**6,796**

☐ 예산현황

(단위: 천원, '18.7.31. 현재)

세 부 사 업	2018년도		2017년도 최종예산	집행액(C) (원인행위기준)	집행률(%) (D=C/B)
	본예산(A)	예산현액(B)			
공제급여	5,883,000	5,883,000	5,617,000	3,442,778	58.5
소송 및 의료자문료	145,800	145,800	145,800	77,440	53.1
보상심사위원회	30,400	30,400	30,400	16,958	55.8
예방사업비	678,000	678,000	207,800	87,254	12.9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비	160,020	160,020	167,580	2,606	1.6
학교폭력피해지원	120,460	120,460	120,460	55,160	45.8
급여	884,029	884,029	789,733	344,966	39.0
수당	187,196	187,196	139,736	111,999	59.8
업무추진비	33,600	33,600	30,000	19,601	58.3
일반운영비	441,979	441,979	365,807	215,587	48.8
차기이월금	7,456,225	7,456,225	10,185,342	12,040,344	161.5
계	16,020,709	16,020,709	17,799,658	16,414,693	102.5

운영방향

- ☐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 여행자공제사업 등을 통하여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고,
- ☐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상담 및 심리적 치료에 대한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며,
- ☐ 학교폭력 피해 지원으로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과 함께 학교구성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 ☐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연구·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교육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여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정착과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함.

주요업무 내역

(단위: 천원, '18.7.31.현재)

주 요 업 무 명	2018년도		2017년도 최종예산	집행액(C) (원인행위기준)	집행률(%) (D=C/B)	쪽수
	본예산 (A)	예산현액 (B)				
공제급여 지급	5,883,000	5,883,000	5,617,000	3,442,778	58.5	11
소송 및 의료자문	145,800	145,800	145,800	77,440	53.1	13
보상심사위원회 운영	30,400	30,400	30,400	16,958	55.8	15
공제회 홍보 및 학교안전공제제도 안내	143,000	143,000	107,500	69,268	48.4	17
여행자공제사업	5,000	5,000	5,000	1,513	30.3	19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160,020	160,020	167,580	2,606	1.6	21
학교폭력피해지원	120,460	120,460	120,460	55,160	45.8	23

작 성 자	예방사업부장 : 송효근 ☎ 6350-5220	담당 : 안승희 ☎ 5222

1 공제급여 지급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함

○ 사업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기금의 용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 지원범위: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 추진 목표

세부사업명	추진시기	물량
요양급여	연중	12,300건
장해급여	〃	17건
간병급여	〃	2건
유족급여	〃	2건
위로금	〃	1건

▢ 추진 실적

○ 요양급여 : 6,771건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 다만, 법원의 판결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장이 부담할 부분은 공제회 부담

○ 장해급여 : 25건

-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

○ 간병급여 : 0건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

○ 유족급여 : 0건

-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지급

○ 장의비 : 0건

-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지급

※ 장의비는 유족급여에 포함되어 지급

□ 향후 추진 일정

○ ’18.8~12월: 연중수시 접수, 심사 및 지급

□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18.7.31.현재)

사업명	2018년도		2017년도 최종예산	집행액		집행률(%)	
	본예산	예산현액 (A)		원인행위액 (B)	지출액 (C)	원인행위액 (D=B/A)	지출액 (E=C/A)
공제급여 지급	5,883,000	5,883,000	5,617,000	3,442,778	3,442,778	58.5	58.5
계	**5,883,000**	**5,883,000**	**5,617,000**	**3,442,778**	**3,442,778**	**58.5**	**58.5**

작 성 자	예방사업부장 : 송효근 ☎ 6350-5220	담당 : 안승희 ☎ 5222

2 소송 및 의료자문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교직원과 교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함
- 학교안전공제회의 운영 등과 관련한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

○ 사업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7조(비용의 보전)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기금의 용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명예학교안전요원,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
- 지원범위: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 추진 목표

세부사업명	추진시기	물량
손해방지경감비용, 변호사선임료	연중	매월 5건
송무활동비	〃	매월 10건
공제급여관련 법률, 의료, 손해사정자문 등	〃	매월 5건

▢ 추진 실적

○ 손해방지경감비용, 변호사선임료 : 15건

-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손해방지·경감비용 및 긴급 조치비용
-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사·형사 소송의 비용 및 공탁대부금

○ 송무활동비 : 16건

- 공제급여의 지급, 보전비용의 지급 등과 관련한 소송 수행

○ 공제급여관련 법률, 의료, 손해사정자문 등 : 40건

- 공제급여의 지급 등과 관련한 법률·의료·손해사정 등의 자문

□ 향후 추진 일정

○ ’18.8~12월: 연중수시 접수, 심사 및 지급

□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18.7.31.현재)

사업명	2018년도		2017년도 최종예산	집행액		집행률(%)	
	본예산	예산현액 (A)		원인행위액 (B)	지출액 (C)	원인행위액 (D=B/A)	지출액 (E=C/A)
소송 및 의료자문	145,800	145,800	145,800	77,440	77,440	53.1	53.1
계	**145,800**	**145,800**	**145,800**	**77,440**	**77,440**	**53.1**	**53.1**

작 성 자	예방사업부장 : 송효근 ☎ 6350-5220	담당 : 안승희 ☎ 5222

3 보상심사위원회 운영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이 불복이 있는 자의 심사청구를 심리·결정하기 위한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운영 및 이에 관련된 업무를 통하여 피공제자 및 청구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

○ 사업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보상심사위원회)

▢ 추진 목표

세부사업명	추진시기	물량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연중	8회 개최

▢ 추진 실적

○ 보상심사위원회 개최 : 총 5회

- 총 5회의 보상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57건의 심사청구 처리
- 보상심사위원회 회의 결정 기간 준수

: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향후 추진 일정

○ ’18.8~12월: 연중수시 접수, 심사 및 지급

□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18.7.31.현재)

사업명	2018년도		2017년도 최종예산	집행액		집행률(%)	
	본예산	예산현액 (A)		원인행위액 (B)	지출액 (C)	원인행위액 (D=B/A)	지출액 (E=C/A)
보상심사위원회	30,400	30,400	30,400	16,958	16,958	55.8	55.8
계	**30,400**	**30,400**	**30,400**	**16,958**	**16,958**	**55.8**	**55.8**

작 성 자	예방사업부장 : 송효근 ☎ 6350-5220	담당 : 안승희 ☎ 5222

4 공제회 홍보 및 학교안전공제제도 안내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학교안전공제회 사업 및 기관을 홍보함으로써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설립 취지를 알리고 제도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피공제자의 권익보호를 실현함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복지 실현 가능

○ 사업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기금의 용도)

○ 사업내용

- 대상: 각급 학교, 학부모, 교육청 등 교육기관 및 교육계 언론사
- 방법: 인지도 제고를 위한 광고 게재, 홍보물 배포, 각종 자격·직무·교장단·행정실장 연수 시 공제제도 및 사업 홍보, 학교안전공제제도 안내 책자 제작·배송

▢ 추진 목표

세부사업명	추진시기	물량
교육언론사 지면 광고 의뢰	연중	4회
홍보 물품 제작 계획 수립 및 실행	〃	수회
학교안전공제제도 책자 배포	'18.3.	18만부

□ 추진 실적

○ 학교안전공제제도 안내 책자 58만 부 제작 및 배송 완료

- 공제회 주요사업 안내
- 학교안전공제 가입 및 신청절차 안내
- 기존과 달리 학부모용, 학교보관용, 보건실 비치용 3종류로 수요자 맞춤 책자 제작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업무 개선 TF 활동 완료

- 추진기간: 2018.1.1.~7.30.(7개월)
- TF 구성: 학교장, 교육청 담당자, 변호사, 교사, 학부모 등 43명
- 각 영역별 TF 결과 내용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이행계획 발표 예정

□ 향후 추진 일정

○ ’18.8~12월: 언론사 지면 광고 게재(2회)

○ ’18.10월: 법률 시행 30주년 기념행사 및 홍보 물품 제작

○ 매년 학교안전공제제도 안내 책자 제작·배송 예정

□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18.7.31.현재)

사업명	2018년도		2017년도 최종예산	집행액		집행률(%)	
	본예산	예산현액 (A)		원인행위액 (B)	지출액 (C)	원인행위액 (D=B/A)	지출액 (E=C/A)
학교안전공제제도 안내	63,000	63,000	59,500	31,611	31,611	50.2	50.2
공제회 사업 및 기관홍보	80,000	80,000	48,000	37,657	37,657	47.1	47.1
계	**143,000**	**143,000**	**107,500**	**69,268**	**69,268**	**48.4**	**48.4**

작 성 자	예방사업부장 : 송효근 ☎ 6350-5220	담당 : 안승희 ☎ 5222

5 여행자공제사업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교육과정의 변화에 맞춰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공제자 및 공제가입자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실현하기 위함
- 여행자보험 가입 등에 대한 일선 학교 현장 행정업무 부담 경감

○ 사업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기금의 용도)

○ 사업내용

- 대상: 각급 학교, 교육청 및 관련 기관
- 방법: 여행자공제관리시스템을 통한 계약·정산·보상 업무 원스톱 플랫폼 구축

○ 기존실적

- 2017년: 2,016건 계약 체결

▢ 추진 목표

세부사업명	추진시기	물량
사업 홍보 강화	연중	4회
공제 상품 및 서비스 개선	〃	수회

▢ 추진 실적

○ 2018년 상반기(1월~6월) 계약 건수: 1,311건

○ 신문 지면 광고 2회, 홍보 공문 1회 시행

○ 여행자공제 상품 및 서비스 개선

- 현재 운영 중인 여행자공제사업의 현장 적합성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학교를 방문하여 실제 여행자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교직원의 고충을 듣고 여행자공제사업 운영에 반영
- 담보 용어 변경

: 행사주최자배상책임 → 학교행사 교직원배상책임(수요자 의견을 참고하여 쉬운 용어로 변경)

□ 향후 추진 일정

○ ’18.8~12월: 연중 수시 청약 접수, 사고 보상 및 사업 홍보

○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시스템 보완 요구사항을 분기별로 정리하여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시스템 개편

□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18.7.31.현재)

사업명	2018년도		2017년도 최종예산	집행액		집행률(%)	
	본예산	예산현액 (A)		원인행위액 (B)	지출액 (C)	원인행위액 (D=B/A)	지출액 (E=C/A)
여행자공제	5,000	5,000	5,000	1,513	1,513	30.3	30.3
계	**5,000**	**5,000**	**5,000**	**1,513**	**1,513**	**30.3**	**30.3**

작 성 자	예방사업부장 : 송효근 ☎ 6350-5220	담당 : 안승희 ☎ 5222

6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

○ 사업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 사업내용

- 대상: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
- 방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기간의 연장 등 심의

▢ 추진 목표

세부사업명	추진시기	물량
자문위워회 개최 및 운영	연중	6회 개최
지원 신청에 따른 심의	〃	매월 10건(예상)
상담지원 비용 지급 등 수행	〃	〃

▢ 추진 실적

○ 자문위원회 개최 : 총 1회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지원신청에 따른 심의 : 총 2건

- 지원신청, 기간연장신청 등에 대한 심의 진행

○ 상담지원 비용 지급 : 총 0명 지원

- 지원대상 선정에 따라 발생된 비용 지급

※자문위원회를 통해 2명의 대상자 선정되었으나 현재까지 미청구

▢ 향후 추진 일정

○ ’18.8~12월: 연중수시 접수, 심사 및 지급

▢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18.7.31.현재)

사업명	2018년도		2017년도 최종예산	집행액		집행률(%)	
	본예산	예산현액 (A)		원인행위액 (B)	지출액 (C)	원인행위액 (D=B/A)	지출액 (E=C/A)
상담지원비	160,020	160,020	167,580	2,606	2,606	1.6	1.6
계	**160,020**	**160,020**	**167,580**	**2,606**	**2,606**	**1.6**	**1.6**

작 성 자	예방사업부장 : 송효근 ☎ 6350-5220	담당 : 안승희 ☎ 5222

7 학교폭력피해지원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가해자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에 기여함

○ 사업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기금의 용도)

○ 사업내용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로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지급
- 가해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 추진 목표

세부사업명	추진시기	물량
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 지급	연중	50건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비용 지급	〃	50건
소송 등 구상 업무 수행	〃	10회
법률 자문 수행	〃	12회

▢ 추진 실적

○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비용 지급 : 56건

-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이행하는 비용 지원

○ 구상 업무 및 법률 자문 업무 수행 : 56건

- 피해학생에게 지원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이를 위한 법률 자문 의뢰

□ 향후 추진 일정

○ ’18.8~12월: 연중수시 접수, 심사 및 지급

□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18.7.31.현재)

사업명	2018년도		2017년도 최종예산	집행액		집행률(%)	
	본예산	예산현액 (A)		원인행위액 (B)	지출액 (C)	원인행위액 (D=B/A)	지출액 (E=C/A)
학교폭력피해지원	120,460	120,460	120,460	55,160	55,160	45.8	45.8
계	**120,460**	**120,460**	**120,460**	**55,160**	**55,160**	**45.8**	**45.8**